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100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본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피 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철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종원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9. 27.자 매매계약 및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 10. 1.자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에게,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 9. 27. 접수 제20494호로 마친,나. 별지 목록 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9. 10. 1. 접수 제20755호로마친,각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371, 000, 000
및 그중 3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6.부터,34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4.부터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피고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 절차에서 우선매각결정을 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4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피고 B을 대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9.9. 6. 30, 000, 000, 2019. 9. 24. 341, 0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원고를 명의신탁자,피고 B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피고 B 은 원고가 피고 B 을 대신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 매매대금 합계371,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원고에게 371,000,000및 각 금원을 지급 받은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 주식회사 C과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B이 피고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피고 주식회사 C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 B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1. 1. 22.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구취지 제3항 기재 원고 주장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404,860,381원(= 원금 및 30,000,000원에 대한 2019. 9. 6.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그 다음날부터 변제공탁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41,000,000원에 대한 2019. 9. 24.부터 위 2020. 9.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그 다음날부터 변제공탁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대구지방법원 2021년 금 제450호로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는 2021년 1월경 위공탁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원고 주장 부당이득반환채권은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이상, 원고의 피고주식회사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다만 피고 B이 변론종결 이후에야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공탁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점 및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직후 피고 주식회사C에 이 사건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여 분쟁이 발생하게 된 점등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 후단에 따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남준우판사 김새미판사 권은석

별지